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65
----------	-------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주진우 · 박준태 · 엄태영
박상웅 · 곽규택 · 유용원
김 건 · 조배숙 · 이양수
윤한홍 · 고동진 · 김위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알선, 주택 관련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며 지역 경제와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정착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지방 및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지역 소멸 위험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단기 거주 청년과 장기 지역 정착 청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 정착 청년이 주택을 구입, 신축 또는 임차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

하거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구감소지역 정착 청년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 용자의 특

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시·군·구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하 “인구감소지역 정착 청년”이라 한다)이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이하 “주택구입자금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정착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용자를 받은 자에게 그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유예 또는 금리의 인하 등 완화된 상환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구입자금등의 용자대상 및 절차, 완화된 상환조건 적용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17조의2(인구감소지역 정착 청년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 용자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시·군·구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하 “인구감소지역 정착 청년”이라 한다)이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이하 “주택구입자금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할 수 있다.</u></p> <p><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정착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용자를 받은 자에게 그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금리의 인하 등 완화된 상환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u></p>

택구입자금등의 용자대상 및
절차, 완화된 상환조건 적용 대
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